마이크로전공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전공제 교육과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2조에 따라 마이크로전공 운영 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마이크로전공이란 9학점 이상 18학점 이하의 교양 또는 전공의 교과목이수트랙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교양 마이크로전공: 교양 교과목으로 구성되는 마이크로전공
- 2. 전공 마이크로전공: 전공 교과목으로 구성되는 마이크로전공
- 3. 융합 마이크로전공: 교양과 전공 또는 전공과 전공 교과목으로 구성되는 마이크로전공
- 제3조(담당 부서) 교양 마이크로전공은 열림교양대학, 전공 마이크로전공은 해당 전공, 융합 마이크로전공은 열림교양대학 또는 대표 전공에서 담당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전공 신설계획 수립 및 위원회 상정
- 2. 학생 이수신청서 접수
- 3. 학생 이수 여부 확인
- 제4조(전공신설) ① 마이크로전공의 신설은 연 2회 승인 가능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확정한다.
- 1. 교양 마이크로전공
- 가. 열림교양대학에서 교양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1〉마이크로전공 신설 승인신 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한다.
- 나. 교무처는 교육과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확정한다.
- 2. 전공 마이크로전공
- 가. 나눔융합전공대학에서 전공교육과정운영위원회 심의 후 〈별지 1〉마이크로전공 신설 승인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한다.
- 나. 교무처는 교육과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확정한다.
- 3. 융복합 마이크로전공
- 가. 마이크로전공 신설 승인 신청의 대표가 열림교양대학인 경우 위 1호의 절차를 따른다. 나. 마이크로전공 신설 승인 신청의 대표가 전공인 경우 위 2호의 절차를 따른다.
- ② 전공신설을 위해 규정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기획위원회를 거쳐 교무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5조(대표교수)** 마이크로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의 지도를 위하여 개별 마이크로전공에 대표교수를 지정한다.
- 제6조(이수 신청) 마이크로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한 기간에 신청하며, 이수 신청에

대한 심사 절차는 따로 두지 아니한다.

제7조(이수 인정) 교무처는 총장의 승인을 거쳐 마이크로전공 이수 학생을 학적부에 등록한다. 제8조(중명) 마이크로전공 이수 내역은 학위증서와 졸업증명서에 표기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마이크로전공 신설 승인 신청서

□ 마이크로전공 개요

과정 유형	□ 전공 마이크로전공		□ 교양 마이크로전공		□ 융합 마이크로전공
승인 요청 전공 또는 부서			※ 융합유형인경우	대표 (전공 또는 부서) 공동 (전공 또는 부서)	
전공명	국문				
*증명서 기재 용	영문				
전공 설명					
전공 목표					
대표 교수					

□ 교과과정표(* 9~18학점으로 구성)

No.	교과목명	과목코드	이수구분	과목개설소속	학점
1					
2					
3					
4					
5					
6					
				학점 계	

[붙임] 전공교육과정운영위원회 또는 교양교육과정위원회 회의록 1부. 끝.

위와 같이 마이크로전공 신설 승인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전공주임교수 또는 부서 담당자:

나눔융합전공대학장 또는 열림교양대학장 : (서명)

성공회대학교 교무처장 귀하